

성폭력 담론의 전형적인 유형과 이의 문제점

성폭력은 물리적, 언어적, 시각적 방법 등의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모든 성폭력은 상대를 성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대, 강요, 힘이 사용된다는 기본적 공통성이 있으며, 강간/추행/성곤욕(성희롱)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형태로 구성된다기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총합이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의 전 생애에 걸쳐 대부분의 여성(94% ;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성폭력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진보적 지식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사회 또한 성폭력의 사각지대가 결코 아니다.

여성들은 항상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 해결과정에서 배제되거나 2차적, 3차적 피해를 받는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대학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기 마련이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습하고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수의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학생은 가해자교수를 교내에서 계속 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무력감을 일으킨다. 가해자가 피해학생의 지도교수일 때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성폭력이 단순히 성폭력이 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3차의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타의 범죄를 논할 때,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유독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적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담론들을 나열하고, 그러한 담론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글이다.

1) 피해자유발론 : “그러게 내가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느냐.”

모든 범죄는 가해자에게 잘못과 그것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왜 내가 그 장소에 갔느냐.”, “내가 왜 꼭 끼는 바지를 입고 있었느냐.” 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2·3차의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배상을 받고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의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음모론 :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그 교수를 밀어내려 하느냐.”

(지도)교수와 제자처럼 권력관계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관계에서 교수가 가해자가 될 경우, 가해교수와 대립관계에 있는 교수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사주 또는 동기부여를 받아 가해교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극단적으로는 교수직을 박탈하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음모론

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뿐더러,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조속한 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3) 애정론 : “너도 즐기지 않았느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다.”

전자의 경우,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담론에 해당하는데, 자신을 짓밟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당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모든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길 원한다는 단순명제에 반하는 위와 같은 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다.

후자의 경우, 사제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범죄의 형태를 띠면서까지 발현되는 것이 문제가 되며, 그러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은 피해자의 이성과 감정을 지닌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결과이다.

4) 가해자 동정론(가해자온정주의) : “그 분이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사람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이 역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갖가지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써, 가해자의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산을 도둑맞은 사람의 자질과 성품을 이야기하는가? 혹은 절도사실과는 관계없는 절도범의 상황과 환경을 거론하며, 또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가?

5) 피해자 정신이상론 : “원래 피해자가 예민하고 불안정하다.”

이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원래 예민하고 불안정한 심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래 성폭력으로 규정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를 확대해석하고 과장했다는 의미이다. 이 역시 가해자의 범죄사실과, 피해자가 이성과 감정을 지닌 전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3)의 담론과 유사하다.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담론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문화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담론에 휩싸이지 않고 여타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나아가 성폭력의 해결과정에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받은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배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